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체력을 정확히 검증하고 소방공무원 직무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체력검정 종목을 현장 직무에 맞게 개편하는 한편, 임신·출산한 여성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체력검정을 위한 충분한 신체 회복시간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체력검정종목을 4종목 5코스로 변경하여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의 직무 적합성을 높임(안 제10조)
- 나.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및 증진, 체력검증의 효율적실시를 위한 체력검정센터를 체력관리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 다.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력검정 미실시 대상에 출산·유산 후 1년이 지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추가함(안 제9조제2항)
- 라. 체력검정 기준시간과 평정점 부여 기준을 명시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 예규 제123호

[시행 2026. 3. 13.] [소방청 예규 제123호] [발령 2026. 3. 13.]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3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를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2. "소방 직무역량 체력검정(이하 "체력검정"이라고 한다)"이란 현장 실무중심의 종목으로 소방공무원 개인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측정하여 직무 필수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3. "완주시간"이란 소방공무원 개인이 체력검정을 실시하여 측정된 시간(패널티 시간 포함)을 말한다.
4. "기준시간"이란 소방공무원 개인의 완주시간에 대하여 평정점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나이별 보정치 등이 적용된 시간을 말한다.
5. "패널티시간"이란 제9조제2항의 제4호 및 제7호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체력검정을 실시하여 코스별 기준횟수를 모두 수행하지 못한 경우 수행하지 못한 회수마다 부과되는 시간을 합친 시간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1회"를 "한 차례"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체력검정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체력관리 및 증진, 체력검정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체력검정시설(이하 "체력검정센터"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체력 증진 및 체력검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체력검정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해당 소방기관의 체력검정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과건·교육·기타"를 "과건·교육·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항제6호"를 "제2항제7호"로, "사람은"을 "사람 및 출산·유산 후 1년이 지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6. 경조사

7. 난임치료시술을 받은 사람 및 출산·유산 후 1년이 지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개"를 "4개"로, "실시하며, 평가 방법

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실시한다"를 "코스
에 따라 연이어 수행한 후 그 완주시간을 측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
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
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기기(1코스와 4코스)
2. 오르기(2코스)
3. 끌기(3코스)
4. 옮기기(5코스)

② 소방청장은 연령·직무별 보정치, 종목별 선택수행 등을 통해 소방
공무원 개인에 대한 기준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
다.

④ 그 밖의 체력검정을 위한 세부운영계획은 소방청장이 수립·시행
한다.

제11조의 제목 "(체력검정성적의 평정점 부여)"를 "(기준시간과 평정점
부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의 기준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과 기준시간 : 6분 33초
2. 보완 기준시간 : 7분 38초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공무원 개인의 체력검정 완주시간에 따른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간에 따른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완주시간이 통과 기준시간 이하인 경우: 5점
2. 완주시간이 통과 기준시간을 초과하고 보완 기준시간 이하인 경우: 4.5점
3. 완주시간이 보완 기준시간을 초과인 경우: 4점

제1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를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체력검정"으로, "성적"을 "평정점"으로, "점수로"를 "평정점으로"로, "1년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35점(평정점 2.5점)"을 "1년6개월 이내에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평정점은 2.5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를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체력검정"으로, "성적을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를 "평정점으"로,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49점(평정점 3.5점)"을 "6개월 이내의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평정점은 3.5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가장 최근에 실시(희망자만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 계급별 평균점수(연령대별 보정지수 포함)"를 "제9조제2항제2호와 동일한(5점) 평정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6월 이내의 체력검정"을 "6개월 이내의 체력검정"으로, "70%"를 "70퍼센트"로, "6월 이내의 실적이"를 "6개월 이내의 실적"으로, "점수는 35점(평정점 2.5점)"을 "평

정점은 2.5점"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2 또는 제9조제2항제6호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체력검정 중 가장 최근의 평정점으로 하되,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체력검정 평정점은 임용권자별 가장 최근에 실시(제7조의2에 따라 일부만 실시한 경우 제외)한 계급별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7. 제9조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미실시한 경우의 평정점은 체력검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전단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체력기관의 장은 체력검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별지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7호의 경우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력검정 종목 변경에 따른 장비구매) 시·도 소방본부장은 이 예규가 공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른 체력검정 종목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력단련"이란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초적 운동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 직무역량 체력검정(이하 "체력검정"이라고 한다)"이란 현장 실무중심의 종목으로 소방공무원 개인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측정하여 직무 필수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3. "완주시간"이란 소방공무원 개인이 체력검정을 실시하여 측정된 시간(패널티 시간 포함)을 말한다.
4. "기준시간"이란 소방공무원 개인의 완주시간에 대하여 평정점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나이별 보정치 등이 적용된 시간을 말한다.
5. "패널티시간"이란 제9조제2항의 제4호 및 제7호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체력검정을 실시하여 코스별 기준횟수를 모두 수행하지 못한 경우 수행하지 못한 회수마다 부과되는 시간을 합친 시간을 말한다.
6. "체력관리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제4조(체력관리계획의 수립)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연도 개시 전까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포함한 체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체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력단련의 시간, 장소, 내용
2. 체력검정의 일시, 방법 등 제반 절차
3. 그 밖의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에 필요한 사항

제5조(체력관리담당관 및 체력교관의 지정)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체력관리담당관과 체력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체력관리담당관 및 체력교관의 직무) ① 체력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속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계획 수립과 지도·감독
2. 체력검정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3. 그 밖의 체력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체력교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속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 시행
2. 체력단련시간을 이용한 체력단련 이론 및 실습교육·훈련
3. 그 밖의 체력증진 및 체력단련에 필요한 사항

제7조(체력검정 및 체력단련의 실시)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매년 4~5월중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미실시자에 대하여 개인별 한 차례에 한하여 추가로 체력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체력검정 운영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체력검정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 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적·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9조 및 제11조 따른 체력검정 대상자와 평점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 조치할 수 있다.

④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7조의 일부를 이용하거나 또는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라서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체력단련을 시킬 수 있다.

제7조의2(체력검정 실시의 예외)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사유로 체력검정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소속 소방공무원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체력검정시설 및 설비)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체 시설 및 설비가 확보되지 못한 기관의 장은 인근 시설을 지정하여 체력검정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8조의2(체력검정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체력관리 및 증진, 체력검정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체력검정시설(이하 "체력검정센터"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체력 증진 및 체력검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체력검정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해당 소방기관의 체력검정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체력검정대상자 등)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다만, 연령정년 5년 미만의 소방공무원(이하 "자율실시자"라 한다)은 자율 실시할 수 있다.

② 체력검정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파견·교육·그 밖의 공무수행 등으로 해당연도 체력검정 기간 중 평가가 불가능한 사람
2. 공상(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소방활동 중 공상이 원인이 되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 발급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4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병역휴직 및 육아휴직 중인 사람,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질병, 신체장애 등 사유로 체력검정이 불가능한 사람
5. 휴직(제3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 직위해제, 정직 중인 사람
6. 경조사
7. 난임치료시술을 받은 사람 및 출산·유산 후 1년이 지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소속 체력관리기관의 장이 검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제12조제1항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카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항제3호(임신 중, 출산·유산)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치료 또는 요양 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명백하게 체력검정 측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2항제7호의 난임치료시술을 받은 사람 및 출산·유산 후 1년이 지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체력검정 종목 등) ① 체력검정은 다음 각 호의 4개 종목에 대하여 코스에 따라 연이어 수행한 후 그 완주시간을 측정한다.

1. 당기기(1코스과 4코스)

2. 오르기(2코스)

3. 끌기(3코스)

4. 옮기기(5코스)

5. 삭제

6. 삭제

② 소방청장은 연령·직무별 보정치, 종목별 선택수행 등을 통해 소방 공무원 개인에 대한 기준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체력검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체력검정을 위한 세부운영계획은 소방청장이 수립·시행한다.

제11조(기준시간과 평정점 부여) ①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의 기준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과 기준시간 : 6분 33초

2. 보완 기준시간 : 7분 38초

② 소방공무원 개인의 체력검정 완주시간에 따른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간에 따른다.

1. 완주시간이 통과 기준시간 이하인 경우: 5점

2. 완주시간이 통과 기준시간을 초과하고 보완 기준시간 이하인 경우:

4.5점

3. 완주시간이 보완 기준시간을 초과인 경우: 4점

③ 제7조의2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현 계급에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부여한다.

1. 제7조의2 또는 제9조제2항제6호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체력검정 중 가장 최근의 평정점으로 하되,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체력검정 평정점은 임용권자별 가장 최근에 실시(제7조의2에 따라 일부만 실시한 경우 제외)한 계급별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전문개정>

2. 제9조제1항 자율실시자 중 불참한 사람은 최근 1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체력검정 중 가장 최근의 평정점을 해당연도 체력검정 평정점으로 하되, 최근 1년6개월 이내에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평정점은 2.5점으로 한다.

3.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체력검정 중 가장 최근의 평정점으로 하되, 최근 2년 6개월 이내의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평정점은 3.5점으로 한다.

4.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점

5. 제9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최근 1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의 70%를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1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

는 35점(평정점 2.5점)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연도 체력검정 이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 결정 되었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평정단위기간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임용권자별 해당 평정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제9조제2항제2호와 동일한(5점) 평정점으로 소급하여 부여한다.

6. 제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근 1년 6개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의 70퍼센트를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1년 6개월 이내의 실적 없는 경우 체력검정 평정점은 2.5점으로 한다.

7. 제9조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미실시한 경우의 평정점은 체력검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전단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체력기관의 장은 체력검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체력검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0점으로 부여한다

⑤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은 없음으로 한다.

제12조(체력검정성적 평정결과 관리)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개인별로 체력검정성적 평정결과를 별지 서식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카드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전자인사시스템에 입력·관리한다.

제13조(체력검정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체력검정 결과를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관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해당연도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반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7호의 경우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력검정 종목 변경에 따른 장비구매) 시·도 소방본부장은 이 예규가 공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른 체력검정 종목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정의)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체력검정”이란 소방공무원 개개인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측정하여 별표의 체력검정 점수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 직무역량 체력검정(이하 “체력검정”이라고 한다)”이란 현장 실무중심의 종목으로 소방공무원 개인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측정하여 직무 필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3. “완주시간”이란 소방공무원 개인이 체력검정을 실시하여 측정된 시간(패널티 시간 포함)을 말한다.
<신설>	4. “기준시간”이란 소방공무원 개인의 완주시간에 대하여 평정점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나이별 보정치 등이 적용된 시간을 말한다.
<신설>	5. “패널티시간”이란 제9조제2항의 제4호 및 제7호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체력검정을 실시하여 코스별 기준횟수를 모두 수행하지 못한 경우 수행

3. “체력관리기관”이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제4조(체력관리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제1항의 체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생략) 3. <u>기타</u>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에 필요한 사항 제6조(체력관리담당관 및 체력교관의 직무) ① 체력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2. (생략) 3. <u>기타</u> 체력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체력교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2. (생략) 3. <u>기타</u> 체력증진 및 체력단련에 필요한 사항 제7조(체력검정 및 체력단련의 실	<u>하지 못한 회수마다 부과되는 시간을 합친 시간을 말한다.</u> 6. -----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 제4조(체력관리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의</u> ----- ----- 제6조(체력관리담당관 및 체력교관의 직무)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의</u> ----- --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의</u> ----- ----- 제7조(체력검정 및 체력단련의 실
--	---

시) ① (생 략)

②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미실시자에 대하여 개인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체력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신 설>

제9조(체력검정대상자 등) ① (생 략)

② 체력검정 기간 중 다음 각

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한 차례-----

-----.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체력검정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체력관리 및 증진, 체력검정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체력검정시설(이하 “체력검정센터”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체력 증진 및 체력검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체력검정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해당 소방기관의 체력검정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체력검정대상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파견·교육·기타 공무수행 등으로 해당연도 체력검정 기간 중 평가가 불가능한 사람

2. ~ 5. (생략)

6. 경조사, 난임치료시술을 받은 사람

<신설>

7.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제12조제1항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카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2항제6호의 난임치료시술을 받은 사람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체력검정 종목 등) ① 체력검정은 다음 각 호의 6개 종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평가 방

-----.

1. 파견·교육·그 밖의 -----

2. ~ 5. (현행과 같음)

6. 경조사

7. 난임치료시술을 받은 사람 및 출산·유산 후 1년이 지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제2항제7호-----
----- 사람 및 출산·유산 후 1년이 지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제10조(체력검정 종목 등) ① ---
----- 4개 ---
----- 코스에 따라 연이어

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실시한다.

1. 악력(kg)
2. 배근력(kg)
3. 앞아랫몸앞으로굽히기(cm)
4. 제자리멀리뛰기(cm)
5. 윗몸일으키기(회/분)
6. 왕복오래달리기(회)

<신 설>

② (생 략)

<신 설>

제11조(체력검정성적의 평정점 부여) ①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점수 기준표(연령대별 보정치 포함)는 별표와 같다.

②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정 점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한 후 그 완주시간을 측정한다.

1. 당기기(1코스와 4코스)
2. 오르기(2코스)
3. 끌기(3코스)
4. 옹기기(5코스)

<삭 제>

<삭 제>

② 소방청장은 연령·직무별 보정치, 종목별 선택수행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 개인에 대한 기준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그 밖의 체력검정을 위한 세부운영계획은 소방청장이 수립·시행한다.

제11조(기준시간과 평정점 부여)

①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의 기준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과 기준시간 : 6분 33초
2. 보완 기준시간 : 7분 38초

② 소방공무원 개인의 체력검정 완주시간에 따른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간에 따른다.

환산하여 부여하되,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체력검정 취득점수 / 14

2. 체력검정 취득점수가 70점을 넘는(연령대 보정치 가산) 경우에는 5점

<신 설>

③ 제7조의2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현 계급에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부여한다.

1. 제7조의2 또는 제9조제2항제 6호에 해당하는 사람 : 최근 2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을 해당 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2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임용권자별 가장 최근에 실시(제7조의2에 따라 일부만 실시한 경우 제외)한 계급별 평균점수(연령대별 보정치수 포

1. 완주시간이 통과 기준시간 이하인 경우: 5점

2. 완주시간이 통과 기준시간을 초과하고 보완 기준시간 이하인 경우: 4.5점

3. 완주시간이 보완 기준시간을 초과인 경우: 4점

③ -----

-----.

1. 제7조의2 또는 제9조제2항제 6호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체력검정 중 가장 최근의 평정점으로 하되,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체력검정 평정점은 임용권자별 가장 최근에 실시(제7조의2에 따라 일부만 실시한 경우 제외)한 계급별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함)로 한다.

2. 제9조제1항 자율실시자 중
불참한 사람은 최근 1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
장 최근의 성적을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1
년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
우 체력검정 점수는 35점(평
정점 2.5점)으로 한다.

3.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최근 2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
의 성적을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2년 6월 이
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
검정 점수는 49점(평정점 3.5
점)으로 한다.

4. (생 략)

5. 제9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
에 해당하는 사람 : 최근 1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의 70%를 해
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1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3
5점(평정점 2.5점)으로 한다.

2. -----
----- 6개
월 이내에 실시한 체력검정 -
----- 평정점-----
----- 평정점으로 ----- 1년
6개월 이내에 체력검정을 실
시하지 않은 경우 평정점은 2.
5점-----.

3. -----
사람: -----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체력검정 -----
-- 평정점으-----
----- 6개월
이내의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평정점은 3.5점---
-----.

4. (현행과 같음)

5. -----

-----.

다만, 제9조제2항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연도 체력검정 이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 결정 되었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평정단 위기간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임용권자별 해당 평정단 위기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희망자만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 계급별 평균점수(연령대별 보정지수 포함)로 소급하여 부여한다.

6. 제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근 1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의 70%를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1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35점(평정점 2.5점)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미실시한 경우의 평정점은 체력검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

----- 제9조제2항
제2호와 동일한(5점) 평정점

-----.

6. -----
----- 6개월 이내
의 체력검정 -----
----- 70퍼센트-----

6개월 이내의 실적 -----
----- 평정점은 2.5점-----
----- . <단서 삭제>

<u>다.</u> <u><신 설></u> ④・⑤ (생 략) 제12조(체력검정성적 평정결과 관 리)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개 인별로 체력검정성적 평정결과 를 <u>별지서식</u>의 체력검정성적 평 정카드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전자인사시스템에 입력・관리 한다.	7. 제9조제2항 각 호에 준하는 <u>사유로 미 실시한 경우의 평정 점은 체력검정위원회에서 정 할 수 있으며, 전단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체력기 관의 장은 체력검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u>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체력검정성적 평정결과 관 리) ----- ----- -- <u>별지 서식</u>----- ----- ----- ---
--	--